

테크래시(Techlash)와 주요국 빅테크 규제 현황

손민숙 연구원

요약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빅테크(BigTech)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며 경쟁사 압박, 탈세, 유해 콘텐츠 책임 회피와 같은 부정적 이슈들이 제기됨. 이와 함께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테크래시(Techlash)가 나타났으며, 세계 주요국들은 반독점 규제 법안, 개인정보보호법 등 빅테크 관련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테크래시가 확산 중이며, 금융당국이 빅테크 규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보험산업의 경쟁 환경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빅테크(BigTech)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테크래시(Techlash)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들이 빅테크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음¹⁾
 - ‘테크래시’란 기술(Technology)과 반발(blacklash)의 합성어로 빅테크 기업들의 유례없는 급성장과 영향력에 대하여 반발 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함
 - 테크래시의 주요 원인은 경쟁사 및 공급사 압박, 조세회피 지역 법인 설립을 통한 탈세, 유해 콘텐츠에 대한 책임 회피,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공유·사용 등임
 - 빅테크 기업은 미국과 유럽의 FAANG²⁾, 중국의 BAT³⁾와 디디추싱(滴滴出行) 등이 대표적이며, 코로나19 이후 미국 5대 빅테크⁴⁾의 주가가 52% 상승하는 등⁵⁾ 최근 급격한 성장을 나타냄
 - 빅테크의 막강한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별로 이에 대응하여 규제를 마련하고 있음
- 미국은 2021년 6월 하원에서 반독점 법안 패키지(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를 발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유럽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제정을 시작으로 빅테크 규제에 앞서고 있음
 - 미국의 반독점 법안 패키지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4개의 법안과 미국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1개의 법안을 포함하여 총 5개의 법안으로 구성됨
 - 해당 법안은 미국 내 월간 이용자 수가 5,000만 명 이상이거나 사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고, 플랫폼을 소유

1) POLITICO(2019. 12. 31), “In 2020, global ‘techlash’ will move from words to action”

2)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 아마존(Amazon), 넷플릭스(Netflix), 구글(Google)

3)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4) 알파벳(Alphabet), 아마존(Amazon),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5) The economist(2020. 2. 21), “So much for the techlash?”

또는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연간 매출 또는 시가 총액이 6,000억 달러를 초과하며, 플랫폼에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핵심 거래 당사자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플랫폼 자체 브랜드 판매가 금지되고,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행위가 금지되며, 서비스 간 데이터 이동이 용이하도록 플랫폼을 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경쟁업체의 인수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사업의 대폭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패키지 법안 외에도 바이든 정부가 미국 경제 경쟁 촉진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동하고, 『오픈앱마켓법(The Open App Markets Act)』이 발의되는 등 관련 입법 및 규제 논의가 지속됨
- 미국은 반독점 정서가 강한 나라로 빅테크 규제 목적은 독점행위 규제를 통한 자국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이며,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수장에 리나 칸이 선임된 이후 더욱 강력한 규제를 추진 중임
- 유럽은 가장 먼저 경쟁법 강화에 앞선 국가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등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에는 빅테크의 데이터 공유 등에 관한 규칙이 포함됨
- 유럽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유럽’을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삼고 관련 정책이나 규제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산업 경쟁력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함

○ 중국은 ‘제조업2025’를 추진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육성을 지원하여 왔으나 최근 빅테크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4월부터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을 시행함

- 중국은 2021년 8월 11일 향후 5년간 기술사업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⁶⁾, 빅테크와 관련하여 해외상장 제한, 민간기업 빅데이터 공유 요구, 금융업 규제, 반독점법 적용 확대 등을 추진 중임
- 중국의 규제 목적은 타 국가와 달리 고객 정보 장악, 고객 정보 해외 유출 방지, 신세대 반발감 우려 및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 전가, 국가 안보를 위한 경계 등 정치적 성격이 강함
- 일본의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은 빅테크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불만 처리와 정보공개 상황을 해마다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법률 도입 취지는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이며, 개인정보 취득 및 이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자료 보고 의무화를 위한 인수합병 지침에 대해서도 검토 중임⁷⁾

6) 中共中央、国务院(2021. 8. 11), “法治政府建设实施纲要(2021-2025年)”

7) 주 일본대사관(2019. 12. 26), “일본경제 주간동향 상세(12.16-12.22)”

〈표 1〉 국가별 빅테크 규제 주요 현황

국가	관련 법안 및 규제
미국	• 더욱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패키지 법안 발의 -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 플랫폼 독점 종식에 관한 법률(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 경쟁 및 호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환 지원 법률(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Act) - 기업 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 오픈 앱 마켓법(The Open App Markets Act) 발의 • 경쟁 촉진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36)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조사 활동
유럽	•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 데이터 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 • 디지털세 부과 추진
중국	• 플랫폼경제 반독점 규제 지침(平台经济领域反垄断指南) • 데이터보안법(数据安全法) •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의 관리·감독
일본	•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 • 개인정보보호법 및 인수합병 지침 검토 중

- 최근 국내에서도 테크레시가 확산 중이며, 금융당국이 빅테크 규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보험산업의 경쟁 환경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